| 의안번호 | 제670호 |
| --- | ---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4년 6월 일<br>(제330회) |

#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

| 발 의 자 | 김봉회 의원 외 6명 |
| --- | --- |
| 발의연월일 | 2014년 6월 2일 |

#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

(김봉회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 번 호 | 670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
발 의 자 : 김봉회, 김희수, 심기보
김형근, 임 현, 김양희
강현삼

## 1. 제정이유

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주요내용

가.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목적(안 제1조)

나.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관리 규정 마련(안 제4조)

다. 위탁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비 지원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제1항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충북문화예술인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94번길 7에 둔다.

**제3조(기능)**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
2. 문화예술 작품의 상시·기획 전시
3.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공간
4.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

**제4조(위탁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
2.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5조(회관의 운영)** 수탁자는 회관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

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6조(사용료)** ① 회관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.

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7조(운영비의 지원)** ① 도지사는 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8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·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,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·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,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탁의 해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
4. 그 밖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

**제11조(청문)**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제1호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위탁협약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# 관련법령 발췌

## ☐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☐ 문화예술진흥법

**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   ○ 설치 시기 : 2014. 5월
   ○ 운영 시기 : 2014. 6월
   ○ 시설 내용 : 문화복합공간 및 회의실, 사무실 등

2. 비용 발생 요인
   ○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시설 운영관리
   ○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위탁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

3. 관련조문
   ○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

4. 비용 추계결과

   가. 추계의 전제
      ○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시설 운영·관리비용 일부 지원

   나. 추계 결과
      ○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시설 운영·관리 비용 : 180,050천원
         - 인건비(2명) 70,800천원, 공공요금 32,450천원
         - 위탁용역 31,200천원, 시설관리 45,600천원

   다. 재원조달방안
      ○ 도 자체재원 사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문화위원회 김봉회 의원
   (실무부서장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김 선 호)

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 2014년) | 2차년도 (2015년) | 3차년도 (2016년) | 4차년도 (2017년) | 5차년도 (2018년)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세 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세 출 | 120,034 | 180,500 | 180,500 | 180,500 | 180,500 | 840,234 |
|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위탁 관리 운영비 일부지원 | 120,034 | 180,500 | 180,500 | 180,500 | 180,500 | 8430,234 |
| | | | | | | |